

## 1. 의결주문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국가정원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정원의 품질 및 운영·관리 평가 결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29981호, 2019.7.16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정원의 품질 및 운영·관리 평가기관을 추가하여, 평가의 전문성·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품질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평가업무의 위탁 확대

(안 제15조의6)

- 법 제18조의7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·관리 평가에 대한 위탁 수행기관으로 국립수목원 및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을 포함토록 함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와 합의 전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9.10월 ~ 11월중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
일부개정령안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의6(정원의 품질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평가업무의 위탁) 법 제18조의7제3항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 국립수목원
2. 법 제18조의14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
3. 정원·수목원 및 식물원에 관한 조성관리 및 연구, 조경 또는 원예를 주된 사업범위로 하여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<u>제15조의6(정원의 품질 및 운영 · 관리에 관한 평가업무의 위탁) 법 제18조의7제3항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”란 정원·수목원 및 식물원에 관한 조성관리 및 연구, 조정 또는 원예를 주된 사업범위로 하여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.</u></p>	<p><u>제15조의6(정원의 품질 및 운영 · 관리에 관한 평가업무의 위탁) 법 제18조의7제3항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국립수목원</u></li> <li><u>2. 법 제18조의14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</u></li> <li><u>3. 정원·수목원 및 식물원에 관한 조성관리 및 연구, 조정 또는 원예를 주된 사업범위로 하여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</u></li> </ol>